

# 7.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6-81號 1996. 3. 18

## 1. 개정이유

미분양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용 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면적제한을 삭제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도 임대용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함. 단 임대주택법등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 함.

나.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

간을 주택분양용택지의 처분 의무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케 하여 미분양 주택을 용이하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장건축용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제활동을 지원

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실제지급일 까지 지급하게 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

마. 부속토지법위의 산정기준인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만을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이를 100분의 3으로 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킴.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조 : 토지국장, 전화 504-91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  
유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